

[X]. 새로운 제7-마장(통신)은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7마장
통신**

**제7마.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통신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통신 망 또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편집적 통제를 행사하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케이블 배급과 관련된 조치. 다만,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제외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기업에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 다. 사설망을 운영하는 인이 제3자에게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

하여 자신의 사설망을 이용하는 것을 당사국이 금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제7마.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7가.2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모바일 단말기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사용하는 최종이용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음

성, 데이터 또는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의 모바일 단말기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들 간 상업적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상용 이동 서비스를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의 통신 서비스 또는 설비를 말한다.

면허란 어떠한 인이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양허, 허가 또는 등록을 포함하는 모든 승인을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의 결과로 그 시장에서의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조치란 제7가.2조(정의)에 정의된 대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망 요소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 간에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공개되는 상호접속 제안으로서, 이를 수락하

려는 용의가 있는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송신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 망이란 유선, 무선, 광 또는 그 밖의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송 시스템,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교환 및 라우팅 장비와 그 밖의 자원을 말하며, 능동적이지 않은 망 요소를 포함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통신 서비스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통신 망을 통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편적 서비스란 당사국의 영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서비스로서, 그 범위는 그 당사국이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제7마.3조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

1. 양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시장의 가치를 인정하며, 유효경쟁이 존재하거나 서비스가 시장에 새롭게 도입된 경우에는 경제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규제 필요와 접근방식이 시장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이러한 측면에서, 양 당사국은 당사국이 다음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가. 그 당사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문제에 대한 예측으로 또는 이미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규제에 참여할 수 있다.

나. 특히, 자체 망 설비를 소유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처럼 경쟁적이거나 경쟁적일 가능성이 있는, 또는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부분에 대해서 시장 원리의 역할에 의존할 수 있다. 또는

다. 최종이용자의 장기 이익에 혜택을 주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다.

3. 제2항에 더하여, 그리고 자국의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당사국은 시장 분석 결과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유효경쟁이 달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통신 서비스 또는 망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제7마.4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의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통하여 이 의무를 적용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나. 소유 또는 전용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다. 전용 또는 소유회선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 상호접속하는 것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마. 교환·신호·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내 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의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자신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요건, 그리고
- 라. 통보, 등록 및 면허

제7마.5조

필수 설비 및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

1. 제2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상 합리적이고 원가지향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요율을 포함한다)으로 다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가. 필수 설비¹, 그리고

나. 세분화에 기초한 망 요소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접근은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다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가. 지배적 사업자가 접근을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설비, 그리고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필수 설비는 전용회선 서비스, 전주, 관로, 도관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지배적 사업자가 세분화에 기초하여 접근을 제공해야 하는 망 요소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경쟁 및 최종이용자의 장기 이익을 포함한 사안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제7마.6조

재판매

1. 당사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2. 당사국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 또는 최종이용자의 장기 이익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여, 어떠한 공중 통신 서비스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재판매용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는지를 자국의 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당사국이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가 재판매용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어떠한 지배적 사업자도 그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7마.7조

상호접속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동일한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공급자와 상호접속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상호접속 협상을 개시하는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접속 약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정보를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제7마.8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 나. 비차별적인 조건(요율, 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 다.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경제적 실현가능성 고려),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 라.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중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선택사항 중 최소한 하나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다른 표준상호접속제안, 또

는

나.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3. 제2항에 규정된 선택사항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을 통하여 그의 설비 및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국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상호접속 제안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제7마.9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다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제7마.10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동종의 상황에서 자사, 자신의 자회사, 자신의 계열사, 또는 비계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가.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효율 또는 품질, 그리고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제7마.11조

번호이동성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시의적절하게, 품질, 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제7마.12조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성장 촉진 및 소비자 복지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효율 증진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국은 국제 모바일 로밍 효율 및 로밍 서비스의 기술적 대안에 대하여 투명성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최종이용자가 소매요율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나. 최종이용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방문할 때 자신이 선택한 기기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는 능력에 대한 장애를 포함하여,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 및 기술적 대안의 사용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

제7마.13조 보편적 서비스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 정의된 보편적 서비스 의무는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당사국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보상이 경쟁 절차 또는 준비비용의 산정을 통하여 결정된, 보편적 서비스 의무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필요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7마.14조 희소자원

1. 각 당사국은 무선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경쟁촉진을 포함한 일반적 이익 목표를 추구하며 운영한다. 사용권에 부가되는 절차, 조건 또는 의무는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한 무선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3. 당사국은 상업용 무선주파수를 할당하기 위하여 경매와 같은 시장에 기초한 접근방식에 의존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주파수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선주파수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당사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제7마.15조

기술 선택의 유연성

1.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들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려는 기술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조치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채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7마.16조

면허 및 승인

1. 당사국은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면허 없이 또는 간소화된 면허 절차에 따라 자신의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허용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2. 당사국이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면허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면허가 요구되는 모든 유형의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나.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면허 기준 및 절차

다. 모든 개별 면허의 조건, 그리고

라. 결정을 얻는 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3. 각 당사국은 공급자의 면허 신청에 관한 결정이 제2항라호에 언급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면허에 부과되거나 면허와 관련된 모든 면허 기준, 또는 적용 가능한 절차, 의무 또는 조건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제공되는 종류의 서비스 또는 망을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신청인이 다음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전자적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수령하도록 보장한다.

가. 면허의 거부

나. 모든 공급자별 조건의 부과

다. 면허의 취소, 또는

라. 면허 갱신의 거부

이러한 경우, 당사국은 신청인이 불복심사기관에 불복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행정 수수료가 객관적이

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이 장²에 규정된 의무의 관리, 통제 및 집행에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에 상응하도록 보장한다.

제7마.17조 규제 원칙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 가.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통신장비 공급자로부터 법적으로 구별되고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것, 그리고
 - 나. 어떠한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어떠한 통신장비 공급자에 대해서도 재정적 이해관계를 보유하지 않고,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도 않을 것
- 이는 당사국이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통신장비 공급자에 대한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통신장비 공급자에 대한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보유하는 당사국은 규제 기능이 소유 또는 통제와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구조적으로 분리되도록 보장한다.
 3. 규제기관의 결정 및 그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의 권한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 부문을 규제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² 행정 수수료는 희소자원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통신규제기관이 그 책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재무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요청 시 신속히 제출하도록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요구할 권한. 요청된 정보는 기밀성과 관련된 당사국의 법에 따라 취급된다. 그리고

나. 금전적 벌칙, 시정명령 또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를 통하여 그 결정을 집행할 권한

5. 각 당사국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결정³에 대하여 통신규제기관 및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독립된 불복심사기관에 불복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한다. 불복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당사국의 법에 따라 잠정조치가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5항에 언급된 불복심사의 심리에서,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공급자가 불복심사에서 결정될 사안에 관하여 불복심사기관에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질 것

나. 불복심사기관이 공급자가 제공한 의견을 고려할 것, 그리고

다. 불복심사기관이 그 결정 및 그 결정이 근거한 사유를 공급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할 것

7.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다음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가. 통신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

³ 한국의 경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내려진 결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 향후 계획에 관한 정보

제7마.18조

집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제7마.4조부터 제7마.11조까지와 제7마.20조의 의무와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제7마.19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규제 결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통지 및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할 것, 그리고

나. 제7마.5조 및 제7마.8조에 명시된 종류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정이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승인되거나 지지되거나 허가된 경우, 요청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결정의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것

2. 이 협정에 이미 규정되지 않은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다음을 쉽게 접근 가능하고 명확한 형태로 공개한다.

가. 둘 이상의 기관에 부여된 모든 책임 및 그 책임이 부여된 기관을 포함한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책임

나. 다음을 포함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

- 1)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규정 및 이러한 규정의 근거
- 2) 서비스의 효율 및 그 밖의 조건
- 3)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4)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 5)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 6) 제7마.21조에 규정된 통신 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일반 절차, 그리고

다. 표준 관련 조치의 제정, 개정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

제7마.20조

기밀성

1. 각 당사국은 제7마.4조, 제7마.5조, 제7마.7조 및 제7마.8조에 따른 약정의 협상 과정에서 다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정보를 오직 그 정보가 제공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전송되거나 저장된 정보의 기밀성을 항상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2.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에서 전송되는 통신 및 관련 트래픽 데이터의 기밀성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다만,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7마.21조

분쟁해결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 장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여된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은 다음을 이행한다.

가. 과도한 지체 없이 분쟁을 검토할 것, 그리고

나. 관여된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것

2. 제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분쟁 해결 요청에 대한 어떠한 조치의 개시도 거부하는 경우, 그 통신규제기관이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내린 결정의 공개 여부를 기밀성과 관련된 그 당사국의 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분쟁에 관여된 공급자가 그 결정이 근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도록 보장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절차는 분쟁에 관여된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법원, 다른 사법 당국 또는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마.22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통신 망, 인프라 및 기술(신규 및 신흥 기술을 포함한다)의 변혁적 영향과, 양 당사국 각국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그러한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통신 망, 인프라 및 기술과 관련된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나. 이러한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포럼에서 협력하는 것

2.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다각화되고 안전한 통신시장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위하여 협력한다.

가. 각국의 영역에서 공중 통신 서비스 및 망에 대한 다양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장려하는 것, 그리고

나. 각국의 통신 인프라의 보안 및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의 전 세계적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자적으로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그러한 표준을 촉진한다.”